##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 안 번호 6917 제안연월일: 2024. 12.

제 안 자 : 정무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번호	의안명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220311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2024.08.23.	제418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2024.11.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부
2203789		유동수의원	2024. 9. 9.	제418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2024.11.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1. 25.)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24. 12. 3.)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주요 기간산업의고용유지를 위하여 2020년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부칙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에 운용이 종료될 예정이나, 법률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청산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기금의 운용 종료에 대비하고 기금 자산의 효율적 정리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기간 종료 후 권리·의무의 국가 승계,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 법률 제 호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제목 중 "운용 기간"을 "운용 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기간 종료 후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의무는 국가가 승계하며, 한국산업은행은 운용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산과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 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 정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u>운용</u>	제2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u>운용</u>
<u>기간</u> ) (생 략)	<u>기간 등</u> )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
	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기간
	산업안정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을 완료하여야
	<u>한다.</u>
<u>&lt;신 설&gt;</u>	③ 제1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
	기금 운용 기간 종료 후 기간
	산업안정기금 운용에 관한 권
	리・의무는 국가가 승계하며,
	한국산업은행은 운용 기간 종
	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금융위
	원회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
	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
	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
	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

	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
	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u>수 있다.</u>
<u>&lt;신 설&gt;</u>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
	간산업안정기금 정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 시기, 절
	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